

시설장비

[] 설치

[] 철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체명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일(철거일)		
	철거사유		

「항만법」 제31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따른 책임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